영등포구의회
제180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2014. 2. 11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

1. 경 과

의안 제270호로 2014년 1월 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하여 이에 따른 운영 및 민간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구민에게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구청장은 구민의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(안 제10조2제1항)

나.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할 때는 그 비용을 보조·융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2제2항)

다. 권한의 위탁범위에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추가로 명시함(안 제17조제1항)

라.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 외의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는 규정 신설(안 제17조제3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❍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구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 임.

❍ 주요내용을 보면

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교육장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, 권한의 위탁범위에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추가 신설함.

❍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「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가 2007. 9. 27 제정되었고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자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육장 설치의 필요성이 커짐.

영등포구에서는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3. 11월 안양천 갈대1구장 옆에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이 설치되었음.

이에 따라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구민, 학생, 어린이 등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.

❍ 참고로 현재 서울시내 타 자치구에 설치·운영중인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은 용산구를 포함하여 13개구로, 직영 2개구 민간위탁은 11개구임.

향후 교육장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업체 선정과 관리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❍ 그 밖에 조문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음.

관 련 법 령

■ 『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』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2.29>

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·군·자치구(이하 "시·군·구"라 한다)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시·군·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<신설 1999.1.21, 2006.7.19, 2011.7.25>

④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09.12.29>